

## 교내게시물관리규정

1996.10.01.제정	2001.03.01.일부개정	2004.05.01.일부개정	2009.07.01.일부개정
2011.04.18.일부개정	2012.08.01.일부개정	<u>2014.03.28.일부개정</u>	

### <학생·장학봉사팀>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본 대학교의 면학 분위기와 학내 미관을 보호하기 위해 교내·외 단체 또는 개인이 게시물을 게시할 때 거쳐야 할 절차와 관리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게시물의 정의) ① 게시물은 본 대학교 교내·외 단체 또는 개인이 게시하는 현수막 및 제반 홍보물을 말한다.

② 게시물의 관리자라 함은 게시물의 내용이 학생 및 교외 관련인 경우에는 학생처장, 교원관련인 경우에는 교무처장, 직원관련인 경우에는 사무처장을 말한다. (개정 2011.4.18, 2012.8.1, 2014.3.28.)

제3조 (게시물게시 범위)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(개정 2009.7.1)

1. 전교생 또는 학과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, 예술, 체육행사 및 외부단체의 참가신청을 요하는 행사
2. 학생회 및 동아리가 주최하는 행사
3. 행정부서에서 총장의 결재를 득한 행사 (개정 2009.7.1)
4. 게시물 관리자의 허가를 받은 게시물 (개정 2009.7.1)

제4조 (규격) ① 현수막의 규격은 11m×1.1m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기타 게시물의 규격은 598mm×848mm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 (게시물의 승인 및 철거) (개정 2009.7.1)

① 교내 단체 및 개인이 특정 목적에 의해 게시물을 게시하고자 할때는 게시물 승인 신청서 (별지 제1호서식)를 작성하여 게시물 관리자의 검인(별표1)을 받아 게시하여야 한다. 단, 행정부서에서 결재를 득한 행사관련 게시물은 검인대상에서 제외한다. (개정 2009.7.1)

② 게시물관리자는 검인을 받지 않고 부착된 게시물은 제3조 1,2,3항의 범위에 포함하지않는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은 철거 할 수 있다. (개정 2009.7.1)

제6조 (게시제한매수) 면학 분위기 및 학내 미관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행사범위에 따라 게시매수를 제한한다.

1. 현수막의 게시수량은 매 행사에 대해 1매를 원칙으로 한다.
2. 제반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는 수량은 전교생 대상 행사는 10매이내, 학과 및 동아리학생 대상 행사는 5매이내, 교내·외 단체 또는 개인 행사는 2매를 원칙으로 한다.

제7조 (게시장소) 교내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하는자는 게시물 관리자가 지정한 현수막설치대, 옥내·외 게시관에 한하여 부착하여야 한다.(개정 2009.7.1)

제8조(게시기간) ①게시물의 게시는 행사 시작 1주일 전부터 행사종료 익일 12:00까지로 한다.  
②게시기간이 종료된 게시물은 행사주관 단체에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.  
③게시물 관리자는 소관 게시물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 관리하고, 자진 철거가 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사무처(관재팀)에 요청하여 철거할 수 있으며, 이때 철거된 게시물은 반환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다. (개정 2009.7.1, 2012.8.1.)

제9조(보호 및 책임) ①허가된 게시물을 고의로 훼손한 자는 관련규정 또는 법규에 따른다.  
②본 규정을 위반한 게시물에 대하여 게시물 관리자는 사무처에 요청하여 지체없이 철거할 수 있다. (개정 2009.7.1)  
③본 규정을 위반한 교내·외 단체 또는 개인은 1년간 게시물 게시를 할 수 없다.

## 부 칙

- ①(시행일) 본 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준용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.

## 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 제2항 개정 규정은 2012.8.1.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





